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65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진선미·신영대·임오경

이학영 • 한병도 • 안태준

한정애 · 김영호 · 송재봉

임호선 · 김문수 · 장철민

정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로 2021년 523건, 2022년 514건,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,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(14.3%)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(13.6%)과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.

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하고,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 신 설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등은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.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때에는 어린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, 어린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·해제 및 관리) ① (생 략)	·해제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
	<u> </u>
<u> <신 설></u>	② 시장등은 통학동선을 고려
	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
	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. 안
	전통학로를 지정할 때에는 어
	린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, 어
	린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
	동발달수준을 고려한 표지 등
	<u>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
②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(생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